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8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이상식 · 임호선 · 양부남
권칠승 · 박정현 · 복기왕
위성곤 · 채현일 · 허영
모경종 의원(10인)

제안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 근거 법률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

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함(안 제3조).

라.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함(안 제4조).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무경찰”이란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을 말한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과 제25조제6항에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 중 “군인·의무경찰과”를 “군인과”로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⑦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